

선 람	기 관 의 장



제850호 2015. 01. 09. (금)

조 례

- 삼척시조례 제883호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3
- 삼척시조례 제884호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
- 삼척시조례 제885호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 9
- 삼척시조례 제886호 삼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 11
- 삼척시조례 제887호 삼척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13
- 삼척시조례 제888호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 ————— 19

규 칙

- 삼척시규칙 제470호 삼척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 21
- 삼척시규칙 제471호 삼척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폐지규칙 - 24
- 삼척시규칙 제472호 삼척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 폐지규칙 ——— 25

훈 령

- 삼척시훈령 제243호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폐지규정 ——— 26

고 시

- 삼척시고시 제2014- 3호 도로명 주소 부여 고시 ————— 27

공 람									
--------	--	--	--	--	--	--	--	--	--

공 고

- 삼척시공고 제2015- 3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29
- 삼척시공고 제2015-14호 공인 폐기 및 등록 공고 ————— 31
- 삼척시공고 제2015-20호 2015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 ——— 32
- 삼척시공고 제2014-24호 삼척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33
- 삼척시공고 제2015-26호 2015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 ————— 42
- 삼척시공고 제2015-28호 2015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 ————— 43
- 삼척시 보건소 공고 제2015- 3호 공인 폐기 및 등록 공고 ————— 46

제174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2014. 12. 23.)에서 의결된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5년 1월 9일

삼척시 조례 제883호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4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2014. 12. 23.)에서 의결된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5년 1월 9일

삼척시 조례 제884호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1인 이상이 전입하는”을 “「주민등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세대를 구성하거나 다른 세대로 편입 또는 세대합가를 하는”으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이전부터”를 “이상”으로, “6개월”을 “1년”으로, “전입세대를”을 “1인 이상이 전입하는 세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원대상은”을 “지원대상은 1년 이상”으로, “6개월”을 “1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원대상은”을 “지원대상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로, “6개월”을 “1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영유아 양육비”를 “전입세대 출생아 지원금”으로, “6개월 이상 경과한 영유아”를 “신생아를 출산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신생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요관광지 관람 및 이용우대
2. 종량제봉투지원
3. 차량이전등록 실비보상
4. 주소전입 장려금 지원
5. 주소전입 현역병 휴가비 지원
6. 전입세대 출생아 지원

제5조 제1항 본문 중 “규정에 의거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 일로부터 6월이내”를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전입 시, 제3호는 차량 이전등록 시, 제4호에서 제7호까지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장려금과 전입유도 대학교 인센티브 지원은 연 2회(6월말, 12월말) 기준일로 하여”를 “장려금의 경우 연 2회(3월말, 9월말)”로, “정산하도록 한다”를 “정산토록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5조 제1항의 신청은 신청서 작성시 주민등록이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 조례에 의한 지원은 공포전일까지 전입한 자로 한정한다.

[별표]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

(조례 제4조 제2항관련)

시책명	적용기준	지원내용	비고
주요관광지 관람 및 이용우대	조례 제3조 제1호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전입세대월당 1매(시설별) - 대상시설 : 환선굴, 어촌민속전시관, 해양레일바이크, 동굴신비관, 탐험관 - 우대내용 : 관람료 및 주차료 무료 - 우대기간 : 발급일로부터 6월	자치행정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센터, 대이동굴관리소, 해양관광시설관리소)
종량제봉투 지원	조례 제3조 제1호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2인이상 전입세대 : 세대당 1회 20ℓ 20매 ※ 단독전입세대 : 세대당 1회 20ℓ 10매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차량이전 등록 실비보상	타시도 번호차량 (전국번호 아닌차량) 소유자로 관내로 전입한 자가 신청할 경우	세대당 1대분 50,000원내 실비 지급 *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
주소전입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호 내지 제2호, 제3호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① 대학생 : 1인당 10만원(재학증명서 제출) ② 군장병 : 1인당 10만원(군인증명서류 제출) ③ 전입하는 세대 : 세대월당 5만원 ※①~③는 상호 중복 지원하지 않음	자치행정과
전입 대학생 인센티브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모집정원의 20%이내 주소이전 대학생 우선 선발	자치행정과
전입 현역병 휴가비 지원	조례 제3조 제3호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현역병 정기휴가비 지원 (1회 10만원)	자치행정과
전입세대 출생아 지원	조례 제3조 제4호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전입세대 출생아 지원 (신청 후 1년간) - 첫째(월 3만원) - 둘째(월 5만원) - 셋째(월 7만원) - 넷째이상(월 10만원)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산 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	자치행정과

제174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2014. 12. 23.)에서 의결된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5년 1월 9일

삼척시 조례 제885호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제4호 중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를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부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2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 이 조례 제28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③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이 조례 제35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같은 조 2항, 3항 중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한다.

제34조의 “100분의 10이상”을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 6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 5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리 4퍼센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 제35조제3항, 제38조제1항제3항제5항, 제38조의2,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174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2014. 12. 23.)에서 의결된 삼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5년 1월 9일

삼척시 조례 제886호

삼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사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이 설치된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삼척시 공설묘지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말한다.
2. "장사시설 주변지역"이란 등봉동을 말한다.
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등봉동 주민을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금의 재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삼척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4조(주민지원금의 용도) 주민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2호의 주변지역 마을회에서 요구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숙원사업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제4조 제1호의 사업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제2조 제2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구성된 마을회에 대해 세대별로 1회에 한해 시행하되 2014년도 사업도 본 조례에 의해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6조(주민지원사업의 결정) 삼척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중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상 사업을 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4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2014. 12. 23.)에서 의결된 삼척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5년 1월 9일

삼척시 조례 제887호

삼척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59조에 따라 삼척시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삼척시 관내에 설치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종합복지센터 : 삼척시 중앙로 28(사직동)
2. 장애아동발달 재활지원센터 : 삼척시 중앙로 28(사직동)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삼척시 중앙시장길71 (남양동)
4. 장애인쉼터 : 삼척시 중앙로 28(사직동)
5. 장애인 거주시설 : 삼척시 도계읍 도계우회로114

제4조(주요사업)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종합복지센터
 - 가. 민원봉사실 운영
 - 나. 휠체어리프트 차량 운영
 - 다. 목욕장 운영
 - 라.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센터 운영
 - 마.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 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사.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및 사업성 강화 사업
 - 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 자. 고용 및 재활사업
 - 차. 직업평가·상담 및 사회적응훈련
 - 카.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장애아동발달 재활지원센터
 - 가. 상담, 진단 및 평가
 - 나.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 다. 재활치료
 - 라. 재가지원 및 가족지원 서비스
 - 마. 정보 및 첨단기술서비스
 - 바. 장애아동발달 재활을 위한 기초조사
 - 사. 그 밖에 장애아동발달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가. 재활치료
 - 나.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 다. 교육지도
 - 라.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생 교육지도
 - 마. 그 밖에 주간보호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4. 장애인쉼터
 - 가. 문화·취미·오락 활동 지원
 - 나. 건강생활 상담·지도 및 취업 알선
 - 다.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장애인 거주시설

- 가. 생활보호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 다. 그 밖에 보호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시설 운영

제5조(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5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연중 운영한다.

제6조(이용 및 고용대상) ① 시설의 이용대상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장애인수급자를 우선 고용한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이용자 선정 등) ① 장애아동발달 재활지원센터의 이용자는 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 중에서 선정하되,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중에서 미등록 장애인으로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가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로 등록 장애인에 준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아동발달 재활지원센터의 이용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 1. 계획된 서비스가 종료되어 목표를 달성한 경우
- 2. 서비스 기간 중에 목표를 달성한 경우
- 3. 장애아동의 사정으로 스스로 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시설의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한다.

1. 장애인복지센터

가. 목욕장 : 1회 1명당 1,000원

나.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차량 및 휠체어리프트 차량 이용료 : 유류대 실비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에 따름

2.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복지법제7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2조에 정하는 본인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따름

제3장 위탁 관리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의 분류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여 분할 위탁하거나 통합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장애인종합복지센터내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장애인 근로고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⑥ 제4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시설 내에서 수행한다. 다만,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어 시설 내에서 위탁사무의 전부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읍·면·동에 지소를 두어 위탁사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장으로부터 보조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보조금과 사업운영 수익금을 근로장애인의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외부시설의 원형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시설물을 파손, 분실, 훼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을 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작업장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와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삼척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삼척시 장애아동발달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74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2014. 12. 23.)에서 의결된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5년 1월 9일

삼척시 조례 제888호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8조의2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을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허가”로, “건축허가”를 “건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3층 이하일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제19조제1항제4호를 같은 항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를 “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고, 제2항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로 한다.

4. 건축분야 기술사

제2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70조에서 정하여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띄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한다. 다만, 대지가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중 “이상”을 삭제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27조의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중이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관측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고를 신청한 경우와 이미 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건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2014년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4. 12. 03.)에서 의결된 삼척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5년 1월 9일

삼척시 규칙 제 470 호

삼척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삼척시 성평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삼척시 성평등 기금의 지원대상은 「삼척시 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2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삼척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삼척시 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5. 지원사업의 추진 능력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해당 사업 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이 추진하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시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에게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삼척시 여성발전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2014년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4. 12. 03.)에서 의결된 삼척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5년 1월 9일

삼척시 규칙 제 471 호

삼척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

삼척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년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4. 12. 03.)에서 의결된 삼척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5년 1월 9일

삼척시 규칙 제 472 호

삼척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 폐지규칙

삼척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년 1월 09일

삼척시장

삼척시 훈령 제243호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폐지규정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공고 제2015-3호

재결서 정보 공시송달 공고

(154kV 삼척그린파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154kV 삼척그린파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 정보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2일

삼척시장

1. 사업의 명칭 : 154kV 삼척그린파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공고기간 : 2015. 1. 2. ~ 2015. 1. 16.(15일간)
4. 재결서정보 수령 장소 : 삼척시청 에너지산업과(삼척시 중앙로 296)
5. 기타 문의사항 : 삼척시청 에너지산업과(☎033-570-4017)

6.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소	해당토지
김명숙	서울 은평구 진관3로15-35 1009동1004호 (진관동, 은평뉴타운구과발)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660
김백기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188-44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산122-1
김종탁	강원 삼척시 원덕읍 축천리 42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481-4
김태룡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64 건영아파트 라동 403호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산128
김태영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56 B동 4703호(도곡동, 타워팰리스)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산128
미등기10	강원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726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726
미등기2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486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486
미등기3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481-6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481-6
미등기4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480-5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480-5
미등기5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479-12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479-12
미등기6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479-3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479-3
미등기7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479-2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479-2
미등기8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479-1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479-1
미등기9	강원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725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725
박재진	강원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991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481-1
안이봉	강원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762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724
임광훈	강원 강릉시 하슬라로124 (교동, 부영3차아파트) 103동 908호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43
정남귀	서울 관악구 문정로16다길 76 (신림동)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산133-1
한인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22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394

삼척시 공고 제2015 - 14호

공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삼척시공인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폐기 및 등록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6일

삼척시장

- 폐기사유 : 2014. 11. 29.자 「지방재정법」 개정시행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변경(경리관 → 재무관)
- 폐기연월일 : 2015. 1. 06.
- 폐기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인명	규격	인영	폐기사유	비고
폐기공인	삼척시주민생활 지원과 분임경리관인	2.0cm * 2.0cm (정방형)		2014. 11. 29. 자 「지방재정법」 개정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변경(경리관→재무관)	

- 등록사유 : 2014. 11. 29.자 「지방재정법」 개정시행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변경(경리관 → 재무관)
- 등록연월일 : 2015. 1. 06.
- 등록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인명	규격	인영	등록사유	비고
등록공인	삼척시주민생활 지원과 분임재무관인	2.0cm * 2.0cm (정방형)		2014. 11. 29. 자 「지방재정법」 개정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변경(경리관→재무관)	

삼척시 공고 제 2015 - 20호

2015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15년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년 1월 8일

삼척시장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2014. 12. 31.기준, 단위 : 명)

계	19세이상 주민수(A)			선거권 없는자(B)			연서대상 주민총수 (A-B)	공표일	공표방법
	주민 등록	국내거소 신 고 재외국민	3년경과 등 록 외국인	계	주민 등록	국내거소 신 고 재외국민			
61,241	61,179	27	35	53	53	-	61,188	2015. 1. 8.	삼척시보, 홈페이지

※ 「삼척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상
청구요건 : 연서대상 주민총수의 1/50 이상 서명 (1,224명)

삼척시 공고 제2015 - 24호

「삼척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8일

삼척시장

삼척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삼척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07호, 2014.3.24. 공포, 2014.9.25.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21호, 2014.9.25. 공포·시행)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 출자·출연기관의 성과계약서 작성 및 평가, 지도·감독 사업의 범위,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
 - 운영 심의위원회의 간사(출자·출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 및 출자·출연여부 등에 대한 심의 등 법령과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안 제6조)

-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시장은 매년 1년 단위 성과 계약서를 체결 하고,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 내용 달성 정도를 평가토록 함.
- 출자·출연기관의 장 보수 책정시 성과계약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함.
-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안 제7조)

- 법 제21조제2항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을 정함.

라.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안 제8조)

-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허가 취소, 설립 목적 달성 불능, 출자기관의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해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경영실적 평가 등(안 제10조)

-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계획의 수립시기 및 수립 내용, 경영평가 관련 제출서류 등에 대한 사항과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안 제11조)

- 성과계약 달성 정도 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을 위한 경영평가단 구성·운영과 구성인원에 대한 자격요건, 권한 및 의무사항을 규정함.

사.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안 제12조)

- 시장은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해 매년 9월말까지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토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토록 함.

아.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안 제13조)

-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의 자격요건을 명시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명,대표자명)·연락전화번호·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삼척시 기획감사실(예산부서)

-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 전 화 : 033) 570-3212
- 팩 스 : 033) 570-3131

4. 참고사항

이 입법예고문은 삼척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입법/공고/고시 란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삼척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삼척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④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법 제20조와 「지방재정법」의 출자 또는 출연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회 의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 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성과계약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도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16조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9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전년도 예산서
-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공고 제2015- 26호

2015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

구 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투표청구 서명인수	비 고
	계	내국인	국내거소 재외국민	외국인		
인원	61,202	61,126	27	49	7,651	※ 서명인수는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삼척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내국인** : 2014년12월31일 현재 삼척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단.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국내거소 재외국민** : 2014년12월31일 현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재외국민
(단.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외국인** : 2014년12월31일 현재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자
(단.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2015년 1월 8일

삼척시장

삼척시 공고 제2015- 28호

2015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내 국 인** : 2014년12월31일 현재 삼척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단,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외 국 인** : 2014년12월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삼척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단,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2015년 1월 8일

붙임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수

삼척시장

[붙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수

■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구별	선거구역 (읍면동)	주민소환 투 표 청 구 권 자 총 수 (19세이상)	주민소환 투 표 청 구 서 명 인 수	1/3 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 할 최 소 서 명 인 수	비 고 (청 구 권 자 총 수 의 15/100)
삼척시	계	61,161	9,175		
	도계읍	11,787		612	1,769
	원덕읍	5,449		612	818
	근덕면	5,375		612	807
	하장면	1,335		201	201
	노곡면	741		112	112
	미로면	1,880		282	282
	가곡면	703		106	106
	신기면	710		107	107
	남양동	8,095		612	1,215
	성내동	7,127		612	1,070
	교 동	9,156		612	1,374
	정라동	8,803		612	1,321

○ 1/3 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 할 최소 서명인수

- 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이상, 100/10,000 이하 범위에서 15/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 산정된 서명인 수가 선거구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미만인 경우에는 5/10,000로 하고, 100/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10,000으로 함.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 5/10,000 미만인 경우의 서명인 수 : 61,161명* 5/10,000 = 31명

- 100/10,000를 초과하는 경우의 서명인 수 : 61,161명*100/10,000 = 612명

■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별	선거구역 (읍면동)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 (19세이상)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인수	1/3 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 할 최소 서명인수	비고 (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삼척시 가선거구	소계	30,934	6,187	-	
	도계읍	11,787		310	2,358
	하장면	1,335		267	267
	미로면	1,880		310	376
	신기면	710		142	142
	남양동	8,095		310	1,619
성내동	7,127		310	1,426	
삼척시 나선거구	소계	30,227	6,046	-	
	원덕읍	5,449		303	1,090
	근덕면	5,375		303	1,075
	노곡면	741		149	149
	가곡면	703		141	141
	교동	9,156		303	1,832
정라동	8,803		303	1,761	

□ 1/3 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 할 최소 서명인수

- 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이상, 100/10,000 이하 범위에서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 산정된 서명인 수가 선거구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미만인 경우에는 5/10,000로하고,
100/1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10,000으로 함.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에 따른 <"가" 선거구인 경우>

- 5/10,000 미만인 경우의 서명인 수 : 30,934명* 5/10,000 = 16명
- 100/10,000를 초과하는 경우의 서명인 수 : 30,934명*100/10,000 = 310명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에 따른 <"나" 선거구인 경우>

- 5/10,000 미만인 경우의 서명인 수 : 30,227명* 5/10,000 = 16명
- 100/10,000를 초과하는 경우의 서명인 수 : 30,227명*100/10,000 = 303명

삼척시 보건소 공고 제2015 - 3호


공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삼척시 공인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폐기 및 등록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9일

삼척시장

- 폐기사유 : 2014. 11. 29.자 「지방재정법」 개정시행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변경(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 폐기연월일 : 2015. 01. 09.
- 폐기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인명	규격	인영	폐기사유	비고
폐기 공인	삼척시보건소 경리관인	2.0cm * 2.0cm (정방형)		2014. 11. 29.자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변경 (경리관 →재무관)	


- 등록사유 : 2014. 11. 29.자 「지방재정법」 개정시행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변경(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 등록 연월일 : 2015. 01. 09.
-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인명	규격	인영	등록사유	비고
등록 공인	삼척시보건소 재무관인	2.0cm * 2.0cm (정방형)		2014. 11. 29.자 「지방재정법」 개정시행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변경 (경리관 →재무관)	


- 폐기사유 : 2014. 11. 29.자 「지방재정법」 개정시행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변경(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 폐기연월일 : 2015. 01. 09.
- 폐기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인명	규격	인영	폐기사유	비고
폐기 공인	삼척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분임경리관인	2.0cm * 2.0cm (정방형)		2014. 11. 29.자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변경 (분임경리관 →분임재무관)	

- 등록사유 : 2014. 11. 29.자 「지방재정법」 개정시행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변경(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 등록 연월일 : 2015. 01. 09.
-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인명	규격	인영	등록사유	비고
등록 공인	삼척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재무관인	2.0cm * 2.0cm (정방형)		2014. 11. 29.자 「지방재정법」 개정시행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변경 (분임경리관 →분임재무관)	

- 폐기사유 : 2014. 11. 29.자 「지방재정법」 개정시행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변경(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 폐기연월일 : 2015. 01. 09.
- 폐기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인명	규격	인영	폐기사유	비고
폐기 공인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분임경리관인	2.0cm * 2.0cm (정방형)		2014. 11. 29.자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변경 (분임경리관 →분임재무관)	

- 등록사유 : 2014. 11. 29.자 「지방재정법」 개정시행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변경(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 등록 연월일 : 2015. 01. 09.
-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인명	규격	인영	등록사유	비고
등록 공인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재무관인	2.0cm * 2.0cm (정방형)		2014. 11. 29.자 「지방재정법」 개정시행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변경 (분임경리관 →분임재무관)	